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39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박민규·김우영·김한규

노종면 • 박선원 • 박홍배

박희승 • 이용우 • 이훈기

임광현 · 한민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정책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설치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선거방송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사가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

전이 있고, 현행법이 방송사·방송학계 등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고, 위원의 결격사유로는 단지정당 가입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원회의 설치·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과 위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학회 등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새로마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

주요내용

-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나. 방송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제외하고 대신 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로 대체함(안 제8조의2제2항제1호 신설).
-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송사 단체 또는 협회,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활동기간·활동실적을 보유한 단체로 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 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때에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

받은 단체는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 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마.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사람, 방송사의 임·직원이거나 방송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함(안 제8조의2제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 방송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 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제3호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 원·활동기간·활동실적을 보유한 단체에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 1.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협회
- 2. 방송학계
- 3. 대한변호사협회
- 4.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때에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받은 단체는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선거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 이 경우 선거방송 관련 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7. 방송사의 임·직원이거나 방송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제8조의3제6항 중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을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4항(제3호에 한정한다)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 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①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1 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 송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 여야 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1 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 방 한다)가 추천하는 각 1명과 다 음 각 호에 따른 단체(제3호를 송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 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 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 이상의 회원・활동기간・활동

실적을 보유한 단체에 한정한

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 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 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 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 | 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 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장이 위촉하는-----. -----
 - 1.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 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를 회 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협회
 - 2. 방송학계
 - 3. 대한변호사협회

려하여야 한다.

- 4.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 항 각 호에 따른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때에는 추천 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 안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받 은 단체는 위원을 추천함에 있 어 전문성 <u>및 공공성 등을 고</u>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방송심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 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 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 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 내에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 이 경우 선 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④ ~ ⑦ (생 략)

- 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① 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① ~ ⑤ (생 략)
 - ⑥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 會)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⑦ (생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 1.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제8

-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 7. 방송사의 임·직원이거나 방 송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 ~ (5) (현행과 같음)
 -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 회)제4항(제3호에 한정한다) •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제재 조치 등

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u> 우를 포함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